

## 인권기록유산 가치와 지평의 확산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이 정 연\*

1. 서론
2. 인권기록유산
  - 1) 유네스코 정의
  - 2) 기록학적 논의
  - 3) 인권기록유산으로서의 5·18민주화운동기록물
3.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가치
  - 1) 기억투쟁과 기억의 정치학
  - 2) 공동생산, 다양한 출처, 공동체 중심적 접근
  - 3) 집단기억 아카이브
4. 결론

\* 한국의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 논저 : 이정연, 유종덕, 이종윤,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맥락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화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0호, 2011, 57-88쪽; 노명환, 조민지, 이정연, 「국정통치기록의 이 관에 관한 국제비교 : 미국, 독일, 프랑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48호, 2013, 145-210쪽.

▪투고일 : 2015년 6월 20일 ▪최초심사일 : 2015년 7월 1일 ▪게재확정일 : 2015년 7월 4일.

## [국문초록]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하게 된다. 공공의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인권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1980년 광주는 짧은 기간에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국가 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 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기억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수호’라는 기록물의 가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기록물을 통해 어떻게 현재화되는지 살펴보고, 인권기록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 인권기록유산, 5·18광주민주화운동, 세계기록유산,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 1. 서론

1992년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은 전쟁과 사회적 변동,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세계기록유산<sup>1)</sup> 사업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해 많은 기록유산이 사라지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테마는 크게 “문명화 과정에 대한 기억, 문화적 다양성과 발현, 국가 이데올로기, 관습과 국가 건설, 자본주의적 투기, 전쟁과 외교에 대한 기억, 노예제에 대한 기억, 정치적 폭력과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 식민 반대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 대한 기억”으로 구분 된다.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기록유산은 등재 신청을 통해 9개의 테마 중 하나로 분류되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유네스코의 관리 대상이 된다.<sup>2)</sup>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 시키고 현재와 미래에 경험과 사상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는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증거하는 5·18 민주화 운동기록물의 “사건”에 대한 가치를 넘어서 “기록물”로서의 또 다른 가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건의 기억이 현재화 되고 교류되고 공유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 1) 유네스코의 다양한 국제 활동 중 하나인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미래세대에 남겨질 수 있도록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여부는 매 2년마다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심사기준은 ‘영향력, 시간, 장소, 사람, 대상 및 주체, 사회적 가치’이다.
  -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유네스코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다.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flagship-project-activities/memory-of-the-world/about-the-programme/objectives/>, [인용 날짜: 2015. 5. 12].

## 2. 인권기록유산

인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인권기록에 대한 유네스코와 기록학계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의 가치와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 1) 유네스코 정의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sup>3)</sup>를 말하며 인권에 대한 담론은 다양하면서도 방대하다. 개인주의 사상, 평등사상, 과학정신의 발달,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론 등이 인권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념은 특정 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발전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당시 서방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인 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자각했다. 또한 이들은 인권의 존중과 보장이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어 그 결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시민의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관련한 자유권적 기본권과 경제·사회·문화적 자유와 관련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구체적인

---

3)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 세계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의 기본적인 한 요소가 되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sup>4)</sup> 제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인권이 ‘강자에 의해 유린된 약자의 권리’라는 소극적 방식의 해석으로 인권침해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한다. 특정한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과제에 따라 인권 해석이 다양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시대나 사회와는 상관없이 인권은 언제나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유네스코는 국제연합(UN, 유엔)산하 기구로 교육, 과학, 문화 등 국제 협력을 통해 인류 평화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다양한 지적 활동의 하나로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있다. 유네스코는 유엔의 인권 규정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한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등재 신청된 기록물들을 심의한다. 심의 후 등재된 기록물은 ‘인권기록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며 유네스코의 인권 기록유산 사업에 함께 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중 ‘인권기록유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

4) 2001. 5. 24, 법률 제64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표 1〉 유네스코 인권기록유산 목록

| 연번 | 기록유산명   | 신청국      | 등재년도 |
|----|---|----------|------|
| 1  | 1893년 여성참정권 탄원서                                       | 뉴질랜드     | 1997 |
| 2  | 1980년 8월 그단스크 파업위원회 21개 요구사항                          | 폴란드      | 2003 |
| 3  | 필리핀 민주혁명 라디오 방송                                       | 필리핀      | 2003 |
| 4  |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                                       | 프랑스      | 2003 |
| 5  | 1976-1983년 인권자료집-테러리즘에 맞선 투쟁과정에서의 진실과 정의, 기억에 관한 아카이브 | 아르헨티나    | 2007 |
| 6  | 칠레인권문헌자료  | 칠레       | 2003 |
| 7  | 해방운동 영상자료 모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07 |
| 8  | 형사재판 기록 253 (1963: 국가 대 넬슨 만델라와 측근들)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07 |
| 9  | 투올 슬랭 학살박물관   | 캄보디아     | 2009 |
| 10 | 공포의 문서  | 파라과이     | 2009 |
| 11 | 1930-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인권운동과 저항운동에 관한 기록유산                | 도미니카공화국  | 2009 |
| 12 |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대한민국     | 2011 |

위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네스코에서 ‘인권기록유산’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기록들은 정치적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억압적 정치권력에 저항하고 전복시키기 위한 이들의 투쟁 이야기를 담고 있다.

루자야 아바콘<sup>5)</sup>은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인권기록유산’<sup>6)</sup>은 우리가 과거로부터의 학습을 통하여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심사위원

6) 본고에서 “로 표기된 인권기록유산은 또 다른 가치와 특성을 가진 인권기록유산과의 구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등재하고 인권기록이라고 인정한 기록물로부터 추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록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미래의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인권기록유산’은 역사적 사건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현재화시킴으로써 미래를 위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인권기록유산’ 등재 및 명명을 통해 ‘인권기록유산’이라고 불리는 기록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권기록유산’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기본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2) 기록학계 논의

국내에서 인권기록과 관련한 논의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시작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과거사청산’과 ‘과거사진상규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사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과거사진상규명과 관련한 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로 약칭)가 설립되었다. 과거사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진실위원회가 추구하는 진실규명을 모델로 희생자 및 가해자들의 광범위한 증언을 수집하고, 그것을 종합하였다. 또한 과거사위원회는 전반적인 인권침해의 실상을 알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sup>8)</sup>는 세계 각국의 진실위원회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각국 진실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보고서

---

7) 루자야 아바콘,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적 의의와 세계기록유산에 인권기록유산을 등재한 도시들간 교류협력 방안」,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백서』, 광주광역시, 2013, 209-213쪽

8) 2005년 5월 31일 한국 현대사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 이에 따라 설립된 기관

를 작성하여 출판하였다.)<sup>9)</sup>

과거사위원회와 관련한 연구로는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sup>10)</sup>이나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콘텐츠 활용 방안<sup>11)</sup>등 과거사위원회의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있다. 한편, 한국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기념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자료관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할<sup>12)</sup>과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sup>13)</sup> 등의 연구는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역할 그리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인식 제고를 위한 기록의 활용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반면에, 인권기록 자체에 대한 논의는 김정하의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기록물의 역할 연구<sup>14)</sup>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 김정하는 논문에서 세계 진실위원회 활동을 예로 들며 인권침해 및 권력남용과 관련하여 기억과 관련한 기록물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의 신장과 회복에 효과적인 무기라고 주장한다.

해외 기록학계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약 10여 년 전부터 폭발적으

- 
- 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해외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자료집』, 2008.
  - 10) 임희연,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호, 2008, 247-292쪽
  - 11) 우지원, 이영학,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11, 67-92쪽
  - 12) 전명혁, 김영경, 「기록관(Archives) 건립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민주화운동자료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호, 2001, 65-90쪽.
  - 13) 노명환, 「영구평화를 위한 조국가주의 역사로의 전환기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역할 : 유럽연합 아카이브즈 설립과정과 유럽차원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독일 아키비스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호, 2010, 227-256쪽.
  - 14) 김정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록물의 역할과 기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 2009, 41-58쪽.



로 증가하였다. 특히 북미 기록학계는 휴머니티에 반하는 인종정소나 강간, 학살 등의 범죄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과 화해, 그리고 사법적 판결에 있어서 기록의 역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기록의 생산자, 아키비스트, 그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셸 캐스웰(Michelle Caswell)은 인권기록 정의의 공통점은 정부가 권력과 폭력을 이용하여 승인한 학대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설명한다.<sup>15)</sup> 즉, 인권기록은 폭력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권력 남용이 기록화 된 콜렉션이라는 것이다.

국내외 기록학계에서의 인권과 관련한 기록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인권기록은 인권 침해 및 권력 남용의 기간 동안 생산된 행정기록을 포함한다. 또한 소송과 법정 그리고 진실위원회에서 인권 활동가들과 법률가들에 의해 생산된 기록들, 죽은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부당한 과거에 대한 집단기억을 구축하기 위해 생존자,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의해 기록된 이야기들, 대규모 폭력에 대한 과학적 증거 등도 인권기록에 포함된다. 따라서 인권기록은 희생자들의 인정투쟁(recognition struggle)<sup>16)</sup>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간 단체, 정부, 대학의

15) Michelle Caswell, "Defining human rights archive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double issue on archives and human rights", *Archival Science* Vol.14, Issue 3-4, 2014, p.208.

16)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는 타자가 자신을 자립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근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에 따르면 인정 과정은 생사를 건 투쟁이다. 생사를 건 투쟁에서 자기의식은 각자 타자의 승인 혹은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 악셀 호네트(Axel Honneth)는 그의 책 『인정투쟁』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 뒤에 감춰진 사회적 투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정투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투쟁은 이미 지적된 것 이상으로 인정 경험과 관련된다. 즉 공유된 무시당한 감정을 사회비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집단적 저항은 단지 미래의 확장된 인정 유형을 호소하는 실천적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은 미래의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인정받게 될 것을 예견함으로써 기존의 조건에서 이를 수 없었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인정투쟁』, 302쪽).

기록보존소, 비정부 및 커뮤니티 기반 조직, 가문 그리고 개인 등에 의해 생산되거나 보존·관리되고 있는 권력 남용과 관련한 넓은 범주의 기록 콜렉션을 포괄한다. 이 모든 기록들은 평가와 선별, 기술, 디지털화, 보존 및 문화 활동을 통해 피해자와 희생자를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대상이 된다.

최근의 기록학계에서는 아카이브 기관과 아키비스트들이 사회가 고통스러운 과거를 대면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기록의 생산과 수집, 보존 그리고 활용을 통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미 있고 논쟁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끄는 데 아키비스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회가 기억과 추모 그리고 망각과 생략을 통해 고통스러운 과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 3) 인권기록유산으로서의 5·18민주화운동기록물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억압적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과정 속에 광주라는 한 도시가 고립되었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겪게 되었다. 1980년 5월 광주는 짧은 기간 동안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체적 자치를 경험하였다. 이 경험은 시민들의 공동체적 유대와 결속을 가능하게 하였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기결정권을 공공집회와 토론으로 표현하였다. 자신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억압하고자 했던 국가 권력<sup>17)</sup>으로부터 폭도가 아닌 민주주의를 염원하였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

이었다. 광주에서의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인정투쟁’은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왜곡된 정체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다.<sup>18)</sup> 인간의 정체성은 자신을 인간으로 규정하는 근본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승인의 유무나 또는 오인에 의해서도 형성되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해진 일정한 해석틀을 통하여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틀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과정, 대중매체나 정치적 사건들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만들어지고 재생산된다.<sup>19)</sup> 문제는 이러한 해석틀이 왜곡될 때이다. 사람들은 인정투쟁을 통해 왜곡되거나 억압된 정체성의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긍심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인정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존엄한 가치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sup>20)</sup>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만행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인권차원의 민주화운동이다.

국가권력의 침탈에 대항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키려 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하 5·18기록물로 약칭)에 살아남아 숨 쉬고 있다.

---

17) 광주 밖에서 언론매체들은 정부 당국의 왜곡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다.

18) 한국사회학회,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나남출판, 1998, 60쪽

19) 위의 글, 61쪽

20) 위의 글, 63쪽

5·18기록물은 1980년 광주에서 억압적 정치권력 하에 정의를 향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시민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담고 있다. 2011년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후 세계 여러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에 많은 교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5·18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즉, 유네스코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의 인정과 그것을 증명하는 기록들이 제대로 규합되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인권기록유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등재 신청 당시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약칭)는 기록물을 1980년 당시 생산된 것과 1980년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로 구분하였다. 이것을 국가기관이 생산한 자료,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이 생산한 자료, 사망자들이 남긴 피해자 유품으로 세분하여 기록물을 분류하였다.

〈표 2〉 등재 신청 당시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구분                  | 1980년대 당시 기록물                           | 1980년대 이후<br>진상규명 과정 기록물                         |
|---------------------|---|--|
| 국가기관<br>생산 기록       | 행정기관, 경찰, 군, 군사법기관                      | 국회, 가해자 재판 및 수사기록                                |
| 시민사회 등 민간인<br>생산 기록 | 성명서와 선언문, 피해자 증언기록, 사진 및 영상기록, 신문, 병원기록 | 성명서<br>신문 및 간행물<br>개인 및 단체 기록<br>학자 연구기록<br>예술작품 |
| 사망자 유품              | 총탄 및 금속물질<br>피복류, 태극기                   |  |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신청서의 목록 20건 중 성명서와 행정기록물 등 일부 기록물만 등재 기준<sup>21)</sup>에 충족했다. 이미 중앙정부로 이관 또는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만이 기준에 부합한 것이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기록을 발굴하고 수집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증언과 일기장, 현장 기자들의 기록물, 시민권기대회 선언문 원본과 미국 선교사들의 사진과 책자, 광주경찰서의 조사 기록 등이 발굴되었다. 추진위원회는 발굴된 새로운 기록을 목록에 추가하고 수정 신청함으로써 5·18기록물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sup>22)</sup>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기록물은 중앙정부, 전라남도청, 광주시청, 광주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군사업기관의 재판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기록물,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물, 취재수첩, 일기, 사진기록, 시민들의 증언,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 등 518민주화운동 사건 당시와 국회의 5·18광주민중화운동 진상조사 회의록,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미국의 5·18관련 비밀해제 기록 등의 진상규명 관련 기록으로 구분된다. 이 기록들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광주에서의 “사건”을 구성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규정하며 증거하고 있다.

- 
- 21)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으로 크게 영향력(기록유산이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경우), 시간(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 장소(기록유산이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locality)와 지역(region)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사람(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과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대상/주제(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현저하게 다룬 경우), 그리고 사회적 가치(하나의 민족 문화를 초월하는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신적으로 두드러진 가치가 있는 경우)임을 밝히고 있다.
- 22) 유네스코는 등재 신청서가 접수되면 요건심사를 통해 신청서가 유네스코가 정한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후 심의회를 열어 등재를 결정한다.

〈표 3〉 등재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분류

| 생산 주체  | 생산 시기    | 설명  | 내용   |
|--------|----------|---|--|
| 국가 기관  | 1980년 당시 | 1980년 5월 18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                 | 중앙정부에서 각 기관으로 계엄포고령 시달, 계엄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시, 비상계엄 및 소요사태에 대한 지시 관련 공문서  |
| 국가 기관  | 1980년 당시 | 1980년 5월 18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                 |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지방정부에서는 5·18 사태일지, 피해상황, 수습대책, 복구기준, 시체 매장계획, 사망자 인적사항 조사보고, 매장자 명단 등 경찰의 1980년 포고령 위반처리지침 및 지시, 포고령 위반 무혐의 처리 수사기록, 포고령 위반사범 접수 및 조사현황 |
| 군사법 기관 | 1980년 당시 | 재판자료 및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자료                                   | 계엄령 위반 군사재판 관련 군검찰부 수사기록,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기소중지자 기록, 군사재판자료 등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판 기록   |
| 시민     | 1980년 당시 | 5·18 당시 상황을 시민 및 지역에 알리기 위한 투사회보 등 제작                 | 성명서, 선언문, 호소문, 총궐기문, 투사회보, 민주시민회보  |
|        |          | 시민 개인기록물과 구술기록  | 일지, 일기장, 기자수첩, 생존자 문자 음성 영상 채록, 518 관련 인사, 관찰자, 유족 등 1500명의 구술기록   |
| 사진 기자  | 1980년 당시 | 신문사 사진기자들이 찍은 5·18 현장 사진                              | 사진, 영상물  |
| 병원     | 1980년 당시 | 피해자 병원 치료 기록  | 진료기록부, 병상기록부   |
| 미국 정부  | 1980년 당시 | 5·18관련 비밀해제 문서  | 미국무부와 주한미대사관이 주고받은 전신자료, 국방부와 CIA 생산 자료  |
| 국회     | 1980년 이후 | 1988년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되어 청문회 개최             | 국회청문회 자료, 국회청문회 방송 테이프 사본  |
| 국가 기관  | 1980년 이후 |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법”에 근거하여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 5,100명 피해자 보상 | 정부 조사결과 보고서와 보상결정서   |

그러나 앞의 기록들은 유네스코가 규정한 ‘인권기록유산’의 기준에 부합하여 심의·통과된 기록들이다. 즉, 유네스코의 등재 신청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록들은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다.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등재되지 못한 5·18관련 기록물은 재판기록 중 법원의 판결문을 제외한 모든 기록물(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기록) 및 5·18 진압과정과 이후에 군(2군 사령부, 특전사령부, 전투교육사령부, 공수여단 등)에서 생산한 기록, 그리고 중앙신문, 지방신문, 해외 신문 등 국내외 언론의 기사 등이다.<sup>23)</sup> 그리고 5·18 이후 생산 및 재생산되었던 사진과 필름,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증언, 각종 도서류와 공식 및 비공식 출판물과 기록물 또한 등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18 관련 유품들<sup>24)</sup>과 관련 그림과 판화 등도 기록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등재되지 못한 5·18기록물이다.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등재된 5·18기록물은 5·18과 관련한 기억과 내용의 일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즉, 유네스코 ‘인권기록유산’으로 규정된 5·18기록물은 5·18과 관련된 피해자, 유가족, 가해자, 간접 경험자들의 기억과 경험에 대한 상당량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유네스코의 ‘인권기록유산’은 인권침해 ‘사건’의 직접적 증거로서의 기록만을 등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맥락의 기록은 기록유산의 등재 대상이 아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권기록을 희생자들의 인정투쟁 활동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과 관련한 넓은 범주의 기록 컬렉션이라고 한다면, 유네스코의 ‘인권기록유산’의 개념과 범주는 협소하다.

23) 박정옥, 이명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3(2), 23쪽.

24) 의류, 양말, 태극기, 보자기 등 섬유류 147점, 총알과편, 동전, 시계, 메달 등 금속류 72점, 구두 샌들, 지갑, 비닐 등 피혁류 23점, 볼펜, 만년필, 단추, 빗, 신분증 등 플라스틱류 32점, 염주 안경알, 머리카락, 병, 총탄유리창 등 기타물품 등.

### 3.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가치

1990년대에 이루어진 과거청산 작업 이후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은 ‘종결된’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다시 환기시키는 듯하였다.

#### 1) 기억투쟁과 기억의 정치학

과거청산의 구체적인 모습은 새로운 체제의 주도세력, 구체제의 지배세력, 체제이행의 과정,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sup>25)</sup> 과거청산은 국가의 공식기억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억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은 단순히 잊었거나 희미해진 과거의 사실을 복원하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갈등의 과정이며 사회세력들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은 권위를 갖고 있던 기억이 부정되고, 새로운 형태의 기억이 공식기억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청산에서 결정적인 문제 중 하나는 누구의 어떤 기억이, 어떻게 강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누구의 기억이 망각되거나 은폐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이하 5·18로 약칭)은 신군부세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의 폭력적 사회통제정책이 실시되면서 5·18과 관련된 모든 기억은 침묵을 강요받았다.<sup>26)</sup> 이 시기의 5·18

---

25) 최정기,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4(2), 2006, 4쪽.  
26) 앞의 글, 5-6쪽.



을 기억하는 데 가장 앞장 선 것은 유족, 구속자, 부상자 등 피해자와 가족들이었다. 5·18피해자와 가족들은 조직을 결성하여 기억투쟁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 특히 5·18에서 살아남은 1970년대 전남대 학생 운동권 출신들은 감시를 피해 수집한 자료들과 증언 채록을 엮었다. 망각을 강요하는 지배 권력에 맞서 그 당시의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5·18피해자들의 기억투쟁의 결과물이었다.<sup>27)</sup>

자료와 증언 채록 수집은 망각을 강요하는 지배 권력에 맞서 그 당시의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5·18피해자들의 기억투쟁의 결과물이었다. 이것은 기억의 ‘제도화’를 의미한다.<sup>28)</sup> 5·18피해자들의 기억투쟁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은 1987년 6월항쟁과 6·29선언을 계기로 변화하였다. 1988년 국회는 특별위원회<sup>29)</sup>를 구성하여 5·18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강제력이 없는 조사권으로 한계가 분명하였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청문회는 5·18 관련자 모두를 증언 청취하지 못한 채 완료되었고, 결국 과거청산의 기본전제인 진상규명에 대한 명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30)</sup>

1989년 5·18보상법이 입법화되고 1990년에 시행되면서 1990년대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보상과 기념사업이었다. 5·18관련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과 기념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법체제하에서 보상과 기념사업은 5·18주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피해자 중심으로 부분적

27) 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28) 최정기,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4(2), 2006, 7쪽.

29) 특별위원회는 산하에 문서검증반, 한미관계소위원회, 자료검증소위원회, 특별법제정 및 사후대책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0) 안중철, 「남아공의 과거청산과 광주해법」, 『민주주의와 인권』 2(1), 2002, 311쪽.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90년 이후 보상 및 기념사업의 진행은 5·18의 성과를 이어받기 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및 현실 복원을 강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기억투쟁<sup>31)</sup>은 보상작업과 기념사업 중심의 변화된 정세에 영향을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5·18에 대한 공식기억도 보상을 받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5·18에 참여했다라도 유족이나 부상자, 구속자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기억은 사회적 아젠다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시민적 저항이나 당시 광주에서 형성되었던 공동체에 대한 기억은 일단락된 보상과 기념사업으로 인해 별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sup>32)</sup> 5·18에 대한 기억이 공식기억으로 자리 잡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또 다른 포섭과 배제의 기제가 작용한 결과였다.<sup>33)</sup>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의 사업은 물리적 피해만을 강조한 채 물질적 보상과 기념사업, 그리고 일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분으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일반국민과 광주·전남지역민 사이에, 피해자와 일반 광주시민들 사이에, 또 피해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강조되었다. 결국, 이것은 5·18로 표상되는 기억투쟁의 역사적 의미가 감소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또 다른 망각의 시작이었다.<sup>34)</sup> 당시 5·18 관련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보상과 기념사업은 커다란 정치적 이슈였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국민들 사이의 합의 보다는 위로부터의 민주화 ‘승인’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승인’을 얻은 5·18

---

31) 5·18로 지칭되는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경험들의 복합적인 총체이다. 그러한 기억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전쟁상태를 기억투쟁이라 부를 수 있다.

32) 최정기, 위의 글, 2006, 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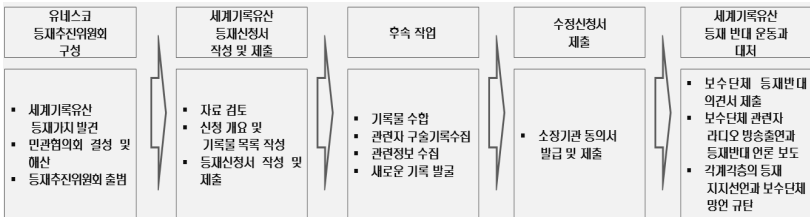
33) 위의 글, 11쪽.

34) 위의 글, 12쪽.

은 사람들에게 일단락 된 ‘과거’의 기억이 되었다. 또한 보상과 기념 사업으로 5·18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현재화’ 되지 않는 이미 ‘완료된’ 과거의 기억이 되었다.

과거의 역사와 기억의 저편에 남아있던 5·18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서였다. 아카이브는 오래된 낡은 더미를 수동적으로 보존하는 창고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협상과 다툼이 존재하고 그것이 공식화되는 장소<sup>35)</sup>이다. 기억은 아카이브에서 ‘발견되거나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어 지속적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기록유산 등재 과정 속에서 사회적 권력의 협상과 다툼 그리고 공식화의 과정이 있었는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억은 아카이브를 통하여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가? 기록과 아카이브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특히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기억투쟁과 의사소통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과정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기록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확인된 후,

35) Terry Cook, Joan M. Schwartz, “Archives, Records, and Power : From (Postmodern) Theory to (Archival) Performance”, *Archival Science* Vol.2, 2002, p.2.

기록유산 등재를 위하여 협의회가 결성되고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추진위원회는 등재 신청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 목록을 작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후속작업으로 흩어져 있는 기록을 규합하였고, 5·18과 관련한 새로운 기록들을 발굴 및 수집하였다. 이러한 추진 과정들은 모두 한국 사회에서 공개되어 공론화되지 않은 채 관련자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 추진 과정에 보도되자, 5·18이 민주화운동임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 보수단체들은 등재 추진에 반대하고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sup>36)</sup> 결국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한국 정세와 맥락을 잘 알지 못하는 유네스코에서는 국내의 단일한 의견을 요구하였다.<sup>37)</sup>

5·18기록물의 기록유산 등재 과정은 1990년대 마무리되지 못했던 진상규명과 기억투쟁에 다시 불을 지피는 듯하였다. 광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보수단체의 행동과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가 한국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3개의 법률 제정—민주화운동피해보상법, 518특별법, 대법원 판결—과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한편 국회는 질의를 통하여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승인할 것이 요구되었다.<sup>38)</sup> 총리 훈령에 따라 주 유네스코 대사는 5·18은 법적으로 이미 종결되었으며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종결돼 처벌됐다는 사실이 적시된 공식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36) 보수단체는 등재 추진을 방해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한 성명 발표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담당관을 직접 면담하기까지 하였다.

37) 유네스코는 한국의 남북한 분단 상황과 그에 따른 보수 세력의 역사 왜곡 등의 한국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였다.

38) 299회 국회 임시회의에서 김영진 위원장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518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질의하였다.

전술한 5·18기록물의 기록유산 등재 추진 과정 속에서 5·18민주화운동과 5·18기록물의 성격 및 가치를 둘러싼 권력의 협상과 다툼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5·18이라는 ‘사건’과 그에 대한 ‘기억’을 ‘승인’, ‘정당화’ 그리고 ‘공식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5·18기록물이 민주화운동 기록물로 ‘승인’되고 그에 대한 기억이 다시 공식화되었지만, 이 과정은 국민들의 의사소통과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5·18은 또다시 국회와 정부의 ‘승인’에 의해 위로부터의 결정에 근거하여 정당화된 것이다. 199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승인’과 ‘정당화’의 한계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 속에서 극복되지 못하였다. 결국 5·18기록물 등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역역과 민간영역을 넘나들며 5·18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 2) 공동생산, 다양한 출처, 공동체 중심적 접근

그 동안 5·18이라는 ‘사건’의 프레임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바라보았다면, 이번에는 ‘사건’에서 ‘기록물’ 자체로 초점을 옮겨보자. 우리는 ‘사건’ 중심의 프레임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5·18기록물의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sup>39)</sup>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목록화되고, 수집되며, 아카이브 구축에 가장 기본이자 중심이 된다. 기록의 생산 과정에 기여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을 기록의 생산자라고 한다면, 5·18기록물은 가해자, 피해자, 희생자 등의 다양한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로 구

39)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사법기관, 국회 등의 국가기관, 일기 및 성명서를 작성하고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한 개인 그리고 5·18 관련자 치료를 담당하였던 병원과 5·18을 예의주시했던 미국 정부기관 등

성되어 있다. 즉, 사건이 아닌 기록의 생산 주체로 관심을 돌리게 되면 가해자, 피해자, 희생자 모두 기록 행위자이며 기록의 주체로 위치가 바뀐다.

그동안 기록은 승리자들에 의해 쓰여져 왔다. 이 기록들은 아카이브를 통해 선별되어 보존·관리되어 왔으며 대부분 국가라는 단일한 출처와 단일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기관으로서의 아카이브 이외 사회 곳곳에 단일 출처와 단일 내러티브에 저항하는 대항내러티브의 기록들이 존재한다. 5·18기록물은 정부기관만이 아닌 5·18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 - 피해자, 희생자, 방관자, 관찰자 등 - 의 기억과 경험의 재현이다. 뿐만 아니라 5·18기록물은 5·18민주화운동과 그것을 경험한 이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집단기억 보존소로 기능한다. 따라서 5·18기록물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대항내러티브를 위한 메타포라고 볼 수 있다.

기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물이다. 기록의 생산과 이용 그리고 아카이빙은 사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 환경<sup>40)</sup> 속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관리한다. 즉, 사회경제적 조건들, 사회적 가치들과 생각들, 사람들의 견해를 기록화하고 아카이빙 하는 행위는 출처를 구성한다. 따라서 개인과 조직의 이름을 통해서 기록생산자들을 단순히 구별<sup>41)</sup>하는 것을 초월하여 생산자와 기록 사이의 관계가 기록화 되고 획득될 필요가 있다.<sup>42)</sup>

---

40) 사회적 환경은 어떤 정보가 알려질 수 있는지, 무엇이 기록 되고 무엇이 기록 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록 될 수 있는지를 구성한다.

41) 출처는 주로 생산자, 규범화된 기능들 그리고 조직의 구조나 연계들과 같이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정보로 표면화된다는 것이다.

42) Tom Nesmith, "The concept of societal provenance and records of nineteenth-century Aboriginal-European relations in Western Canada: implications for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rchival Science* Vol.6, 2006, p.352.

기록은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사회과정을 반영하며 단일한 내러티브가 아닌 다층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형성한다. 또한 기록은 단일한 출처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내러티브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의를 5·18기록물에 적용하여 기록 생산의 맥락을 확장시켜 보자. 즉, 5·18 기록물과 관련하여, 5·18이라는 동일한 사건의 공동생산자로서 생산 주체는 누가 있는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누락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기록들은 무엇이 있는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아카이빙이 진행되었고 어떤 기록이 이용되었는지 등 5·18과 관련하여 생산되었거나, 생산되었는데 남겨지지 않은 기록과 아예 생산되지 않은 기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기록 생산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맥락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지 못한다. 5·18기록물은 5·18이 인권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인지를 입증하는 기록과 이를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수집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초반 침묵을 강요받았던 생존자와 유가족의 노력 때문이었다. 5·18피해자들은 조직을 결성하여 생존자 중심의 증언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5·18피해자 커뮤니티의 노력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활동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저항이자 기억투쟁이었다. 등재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그 기준에 합당한 5·18기록물이 집결되었으며, 결국 5·18피해자 커뮤니티의 노력과 그들의 정체성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5·18기록물의 생산, 수집과 이용이 5·18피해자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캐스웰의 커뮤니티 중심 접근 방

식<sup>43)</sup>은 상당히 의미 있다. 캐스웰이 주장한 참여<sup>44)</sup>, 공유관리<sup>45)</sup>, 다양성<sup>46)</sup>, 기록 행동주의<sup>47)</sup>와 성찰<sup>48)</sup>의 5원칙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 접근해 보자.<sup>49)</sup> 5·18피해자 커뮤니티 중심의 기록물 논의는

- 
- 43) 캐스웰에 따르면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기억작업과 관련한 능동적인 참여는 커뮤니티 내부로부터 나온다. 또한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유관리는 생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반영한다. 한편, 아카이브는 인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포맷과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단일하거나 지배적인 메타 내러티브가 아닌 다툼, 불일치, 논쟁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아키비스트들은 인권침해를 개념화하고 설명책임성에 헌신한다. 뿐만 아니라 아키비스트들은 인권기록관리를 위해 자아성찰을 하며, 이를 통해 파트너십의 성공과 실패를 계속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다. 캐스웰은 또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기록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통제를 생존자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생존자 중심의 인권 기록관리’를 주장한다. 정치적 억압 상황에서 생산되고 생산 맥락에 연계된 활동과 관련한 기록의 중심에 생존자들이 있어야 하며 미래의 기록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44) 캐스웰은 플린(2009)을 인용하여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특징을 커뮤니티의 능동적인 ‘참여’로 정리한다. 즉, 커뮤니티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용어로 자신의 집단과 로컬리티의 역사를 기록화하고 아카이브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45)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기록에 대한 일정한 지적통제를 유지하고 주류 기록보존소는 공간과 인프라 그리고 기타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커뮤니티 기반 아카이브와 주류 기록보존소 사이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록의 보관, 수집, 큐레이션, 유통과 자문에 대한 책임이 공유되는 것을 말한다.
- 46) 글로 쓰여진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주류 기록보존소와는 달리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다양한 범위의 매체를 수집한다. 다양한 매체에 대한 개방성은 주류 기록보존소가 역사적으로 무시해온 문화적 차이점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또한 다양성은 매체를 초월하여 커뮤니티 내 차이점들 또한 기록화 하는 다양한 내러티브로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 47) 주류 기록보존소에서 무시당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온 주변화 된 집단들이 자신의 기록을 수집하고, 남기고, 관리하는 것의 의미를 커뮤니티 구성원의 자아와 정체성 형성에서 보다 큰 사회 및 정치적 운동의 일부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 48) 커뮤니티 아카이브 실무자들은 비판적인 자아 성찰을 통해 아카이브가 구성되고 보여지는 방식과 콜렉션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하면서도 모순적인 문제들을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다. 자아성찰은 실무자들의 커뮤니티 구성원들과의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대화와 관련 학문에 대한 연구 및 반응을 통해 가능하다.
- 49) Michelle Caswell,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Vol.14, Issue 3-4, 2014, pp.307-322.



5·18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피해자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한다. 한편, 5·18기록물을 다루는 실무자<sup>50)</sup>들은 기록을 어떻게 다루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지속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은 커뮤니티 정체성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위로부터의 ‘공식화’에 따른 박제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혹은 커뮤니티를 가로질러 형성된 기억<sup>51)</sup>들이 또 다른 기억들과 충돌함으로써 새로운 기억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

### 3) 집단기억 아카이브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후속사업으로 아카이브 설립이 추진되었다. 다양한 출처의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육군본부, 광주광역시청, 518기념재단, 국회도서관,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에서 분산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이 흩어져 보존·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수집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는 목록작업을 통해 기록의 생사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 및 관리,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 5·18아카이브<sup>51)</sup>를 설립하였다.

개인의 기억은 경험과 감성을 사회적으로 공유<sup>52)</sup>함으로써 사회적 기억이 된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에 따르면 각 기

50) 실무자는 커뮤니티 내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 아카이브 전문가가 아키비스트 일수도 있다.

51) 2015년 광주 (구)카톨릭센터 자리에 5·18 아카이브센터가 개관하였으나 아직 인터넷 사이트는 오픈되지 않은 상태이다.

52) 아네트 쿤(2007)에 따르면 사회적 공유는 문화적 도구에 의해서 매개되며 이러한 도구들은 물리적인 형태로 뿐만 아니라 글로 작성된, 구전의 형태로는 ‘텍스트’이다. 풍경, 건물이나 기념비는 기억 텍스트로 제공될 수 있으며, 반면에 텍스트는 전체가 공동의 기억, 의례, 그리고 퍼포먼스로 표현된다.

억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개인에 대한 독점적인 관심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인상과 각각의 사실은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유래하는 생각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억은 집단 기억의 측면이나 일부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기억 활동은 종이 일기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다른 대중과 사적인 기억 텍스트와 연결된다. 개인의 기억들은 가족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인 것과 함께 개인적인 것을 종합하는 네트워크로 확산된다.<sup>53)</sup>

단일한 집단 기억은 없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이 기억하는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사건에 참여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이 5·18아카이브를 통해 5·18기억을 공유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은 개인의 가족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인 경험의 폭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5·18민주화운동과 5·18기억을 구성한다. 이들의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중재는 문화적 도구라고 일컬어지는 문학,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기념비나 세레모니 의례, 퍼포먼스를 통해서이다. 아카이브를 통한 중재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카이브에서는 서로 다른 층위를 가진 내러티브들이 끊임없이 재활성화되고 재구성된다.<sup>54)</sup>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산되고, 보존되고, 수집되고 관리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과 조직의 기록뿐만 아니라 레코드와 아카이브를 포괄하는 컨티뉴엄에 근거하여 5·18아카이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5·18아카이브는 5·18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생산된 레코드와 아카이브가 어떤 맥락 속에서 생산되고 보존되고 관리되는지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기억에 어떻게 연

---

53) Annette Kuhn, "Photography and cultural memory: a methodological exploration", *Visual Studies* Vol.22(3), 2007, p.284

54) Eric Ketelaar, "Sharing : Collected Memories in Communities of Records", *Archives and Manuscripts* Vol.33, 2005, p.50.

관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5·18아카이브는 구전으로 전해 지거나 또는 퍼포먼스 되며 기억되는 메뉴스크립트 콜렉션과 5·18 관련자들과의 연관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조직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5·18아카이브는 개인과 조직의 행동과 문화에 대한 충분한 층위를 형성해야 한다.

조안나 사순(Joanna Sassoon)은 고고학과 오브제와의 관계를 예로 들며 고고학적, 지리학적 그리고 문화경관을 바라보는 기록학적 사고를 설명하고 있다. 기록학적 사고는 아키비스트들이 ‘왜 기록이 생산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이 생산되는지, 기록을 통해 어떤 메시지들이 소통을 위해 계획되는지, 그것을 위해 기록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익숙하게 한다.<sup>55)</sup>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 유물과 관련한 다양한 맥락들을 연결시켜가는 고고학자처럼 아키비스트 또한 기록을 둘러싼 문화경관을 연결시켜간다. 기록과 문화경관을 연결시키는데 디지털 기술과 소셜 매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록의 공동생산자이자 아카이브의 공동설립자라는 ‘공유’ 개념을 수용하며, 네트워크 공간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한다.<sup>56)</sup>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맥락에서 글로 기록된, 다양한 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과 구술 내러티브 및 기억을 연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은 아카이브가 다양한 장르, 형태 그리고 매체의 기록들을 수용하고 기록 통제를 공유하며 권리를 협상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양한 동시적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커뮤니티, 조직 그리고 사회의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집단기억 아카이브로서 5·18아카이브의 가치와 방향

---

55) Joanna Sassoon, *Sharing our Story: An Archaeology of Archival Thought*,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 2008.

56)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Toward the Archival Multiverse: Challenging the Binary Opposition of the Personal and Corporate Archive in Moder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rchivaria* Vol.76, 2013, p.138.

에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아카이브<sup>57)</sup>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단일한 위치의 한정된 숫자의 문서들을 보존·관리하는 전통적인 아카이브를 초월한다. 만델라 아카이브는 장소, 경관, 물리적 오브제, 퍼포먼스, 사진, 예술작품, 이야기 그리고 개인의 기억들을 기록과 연결시킨다. 즉, 만델라 아카이브는 ‘넬슨 만델라’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통해 넓은 범위의 유·무형의 무한한 오브제를 포함하고 있다. ‘만델라 모델’은 만델라와 관련된 기록의 생산과 기록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델라가 직접 생산한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그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 사법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저항시스템 그리고 진실과 화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물리적, 지리적, 그리고 행정적 환경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관련자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만델라를 중심으로 잃어버린 맥락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집단기억 아카이브로서의 5·18아카이브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하여 ‘만델라 모델’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18아카이브는 5·18민주화운동 ‘사건’ 자체를 초월하여야 한다. 만델라 아카이브는 ‘만델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출처를 가진 다양한 형식의 매체들의 맥락들을 찾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18아카이브 역시 단순히 사건 중심의 5·18 대한 기록과 기억의 재구성만이 아니라, 5·18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출처로부터 유래하는 다양한 형식의 매체들의 맥락들이 연결되는 개방된 형태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기준에 근거하여 권위를 부여받은 ‘인권 기록유산’에서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침묵되고 가려졌던 것들이 폭로되고 논쟁되는 인권기록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유산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57) 만델라 아카이브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archive.nelsonmandela.org/>

서비스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생산되고, 무엇을 목적으로 생산되었는지, 어떤 기록이 생산되지 않았는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통해 어떤 메시지들이 소통을 위해 계획되는지, 그것을 위해 기록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지속적으로 기록들 사이의 맥락이 연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5·18아카이브는 과거의 기억이 어떻게 현재화되고 있는지를 기록화 해야 한다. 5·18아카이브는 대부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생산된 기록물과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사건 이후 생산된 기록물을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관리한다. 그러나 5·18이 희생자, 생존자, 유가족, 관찰자 등 국민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현재화되고 있는 지까지 기록화 되어야 5·18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맥락이 연결될 수 있으며 관계가 재구성될 수 있다.<sup>58)</sup> 뿐만 아니라 5·18과 관련한 의례나 기념식, 관련 활동 또한 모두 포함되어야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 재구성되며 문화경관이 구성될 수 있다.

#### 4. 결론

1990년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과 보상 중심의 논의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국민들 사이에 공론화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결국 5·18은 국가로부터 공식기억으로 승인됨으로써 국민들 기억 속에 박제되었다. 2011년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등재 신청과정에서 5·18과 관련한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유네스코 등재 신청의 한계로 또 다시 국가에 의한 ‘승인’으로 일단락되었다. 즉, 5·18기록

---

58)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의 생존자들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자신의 기억과 관련한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과물로 전시회를 열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였던 일들도 포함될 수 있다.

물과 관련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의 다양한 상호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승인’을 통하여 일단락되고 만 것이다.

그 동안 ‘인권기록유산’으로서의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것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한 기록유산의 의미일 뿐이었다. 5·18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는 무엇인지, 기록물로서의 가치는 무엇인지, 기록물 등재 신청 과정 속에서 기억의 환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5·18아카이브는 어떤 모습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였다. 결국 5·18아카이브는 5·18피해자 커뮤니티나 국민들 사이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채 설립되었다.

본고는 유네스코와 국내외 기록학계에서의 인권기록에 대한 정의 및 논의를 정리하고,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인권기록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사건이 아닌 기록물에 초점을 두어 5·18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록은 고정되어 있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기록의 특성을 간과한 채, 5·18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것은 전통적인 아카이브를 웹상으로 그대로 옮겨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넬슨 만델라를 중심으로 ‘만델라 모델’이 구축되어 가듯이, 5·18아카이브 또한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5·18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5·18모델’은 ‘사건’을 초월하여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장소의 ‘기록’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연결해가는 아카이브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강요당했던 침묵까지 드러낼 수 있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넘나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아카이브이다. 뿐만 아니라 ‘5·18모델’은 5·18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현재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기록화 되는 아카이브이다.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이 기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기록화 된다는 것은 과거 속에 묻혀서 완료된 기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의미가 만들어지는 기억을 뜻한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소통이다. 세대 간의 소통일 수도 있고 계층 간의 소통

일 수도 있으며 희생자, 생존자, 관찰자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자와의 소통일 수도 있다. 5·18아카이브는 5·18과 관련한 기억들을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연결하여 ‘5·18 문화경관’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5·18아카이브는 오래된 기록과 기억의 창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해가는 살아있는 아카이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 Expansion of the Value and Prospect of the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 Focusing on the 5·18 archives

Lee, Jung Yeon

Struggles to gain acknowledgement of identity have a characteristic of movement to recover human dignity. Participants in this movement come to confirm themselves as the subject of rights and communicate one another, free from oppression. Being guarantee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opinion formation process i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human rights. In 1980, though it was short and incomplete, Gwangju experienced communal autonomy under the condition that state power was temporarily stopped.

The contents and memories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at intended to protect autonomy of civil society, resisting pillage of state power, remain intact in th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The 5·18 archives were registered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in 2011, with its value of human rights and protection of democracy being acknowledged. The 5·18 archives have memories of resistance and struggles for justice, and sacrifices and pains of citizens under oppressive political authority in Gwangju, 1980. Thus, these archives are related to the historical struggles for democracy, and suggest a lesson on the transition process towards democracy to us.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documentary heritage constantly lead



the memories of historical events to the present, and enable exchanges of experiences and ideas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is study, through the process of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ration and post-registration process, beyond the value of archives, tries to examine how historical events are led to the present, through the archives and to discuss the other values of archives.

**Key words :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Memory of the World, 5·18 archives**